

 <p>교육부</p>	<h1>보도자료</h1> <p>2020. 7. 6.(월) 배포</p>	
--	--	---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◆ 요양급여 중 입원료의 상급병실 기준을 '5인 이하'에서 '3인 이하'로 완화
- ◆ 척추·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세분화
- ◆ 공제급여 청구 시 진료비 납부서 원본 제출 의무 삭제로 편리성 제고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7월 7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(이하 학교안전법)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안전사고*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 **상급병실 기준**을 조정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,

* 학교안전사고: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·교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 (「학교안전법」 제2조제6호)

○ 장애급여 산정*을 위한 **신체장애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**하여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에게 **적정한 급여가 지급**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**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**하기 위함이다.

* 장애급여: 요양급여(치료비, 입원료 등)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청구(「학교안전법」 제37조)

□ 이번 **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○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 기준*에 맞추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을 '5인 이하'에서 '**3인 이하**'로 낮춰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**상급병실 입원료 부담**을 경감하였다.

* 상급병실: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경우, '3인 이하' 입원 병실

- 개정 전에는 **일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**가 상급병실(5인 이하)을 이용할 경우 **추가비용**을 부담하였으나,

※ 단, 전신화상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상급병실 입원료를 지원하였음

-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상급병실 이용료 부담 대상이었던 4~5인실 입원환자도 **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** 하였다.

○ 또한, 척추·흉터 등 **신체부위별 장애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**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**적정한 보상**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**척추·흉터**는 기존 3개 등급에 **2개 등급**을 추가·**신설***하여, 기존 장애등급 구간의 격차를 완화하였고,

* 척추: (기존) 6급, 8급, 11급 → (개정) 기존 + **7급, 9급**

흉터: (기존) 7급, 8급, 12급 → (개정) 기존 + **9급, 11급**

- '**청력**'은 **양쪽 귀의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**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, 양쪽 귀의 청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양쪽 귀의 청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완전했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였다.

□ 이와 동시에, 「학교안전법 시행규칙」의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.

○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 중 '**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**' 제출 규정을 **삭제**하여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.

- 아울러, **스마트폰, 컴퓨터(PC)** 등을 이용하여 진료비 납부서 사본 등을 보다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

현 행	개정안
	< 부 칙 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
제2조(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	
제3조(신체장애의 등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장애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	

붙임 2 학교안전법 시행령 장애등급 판정 관련 변경 사항

장애유형	개정 전		개정 후	
	등급 (노동력 상실률)	신체장애	등급 (노동력 상실률)	신체장애
정신	제1급 (100%)	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자	제1급 (100%)	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
	제2급 (100%)	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자	제2급 (100%)	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사람
	제3급 (100%)	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	제3급 (100%)	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
청력	제4급 (90%)	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		
	제6급 (70%)	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	제6급 (70%)	가.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.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
	제7급 (60%)	고막의 중등도(中等度)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	제7급 (60%)	가.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.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
	제9급 (40%)	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	제9급 (40%)	가.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.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다. 한쪽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
	제10급 (30%)	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	제10급 (30%)	가.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.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

장해유형	개정 전		개정 후	
	등급 (노동력 상실률)	신체장해	등급 (노동력 상실률)	신체장해
척추	제6급 (70%)	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	제6급 (70%)	척추에 심한 변형이나 심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
			7급 (60%)	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
	8급 (50%)	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	8급 (50%)	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
			제9급 (40%)	척추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
	제11급 (20%)	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	제11급 (20%)	척추에 변형이 남은 사람
외모의 흉터	제7급 (60%)	외모에 현저한 흉한 모양이 남은 자	제7급 (60%)	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은 사람
	제8급 (50%)	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	제8급 (50%)	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
			제9급 (40%)	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
			제11급 (20%)	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
	제12급 (15%)	외모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	제12급 (15%)	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

붙임 3

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청구절차 안내(시행규칙 개정 시)

PC 및 스마트폰 청구 가능

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청구가 간소화됩니다!



공제급여 청구절차



01 시스템 접속
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(<https://schoolsafe.or.kr>)에 접속



02 화면에서 청구서 작성
PC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 바로 작성 (프린트 할 필요 없음)



03 구비서류 업로드
구비서류도 (우편발송 없이) 바로 PC나 모바일로 업로드



04 심사 및 지급
공제회에서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

PC 및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!

-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(<https://schoolsafe.or.kr>) 접속
- 공제급여 청구 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청구서 작성시 각종 구비서류(진료비계산서, 진단서 등)를 이미지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.
- 다양한 환경(IE, Chrome, Safari 등)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공제급여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.

학교 사용자 통계 기능도 강화됐어요!

문자 및 숫자만으로 표현되던 통계를 이젠 시각화된 그래프 형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!

